

2026년 경북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무기체계 해외수출 물량 증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수출 무기체계 부품 생산기업의 방산 수출 부품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생산성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방산 해외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신속 대응을 위한 생산성 향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구미지역(본사 또는 공장 등) 중소기업*으로서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 무기체계('22년 ~ '25년 기준 연간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금형/설비의 설치 위치가 구미 사업장
 - * 재지원 제한 : 직전 2개년도 연속 지원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구미시 소재 : 기업당 최대 147,154천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 금형/설비설치 위치 : 구미시 內
 -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모집규모, 지원금 일부 삭감 등)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2026년 9월 ~ 11월(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신청 자격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

구 분	세부기준
① 소 재 지	사업장 소재지(본사, 공장, 연구소, 영업소 등)가 구미시에 소재하는 기업 금형/설비의 설치 위치가 구미 사업장
② 생산제품	2022년 ~ 2025년 기준 연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③ 규 모	「중소기업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해당 없음)
④ 대 상	신청과제가 설비지원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 (신청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기업
4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5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최근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비적정”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 ‘BBB’ 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 건은 제외한다. ※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 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6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7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8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 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3. 신청절차 및 내용

- (모집기간) 2026. 9. 10.(목) ~ 2026. 9. 17.(목) 14:00까지
- (접수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항공방위산업육성실
-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접수
-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현장실태조사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최종선정	사업수행
경북TP '26. 9.	⇒ 현장확인 '26. 9. 18.	⇒ 선정평가위원회 '26. 9. 22.	⇒ 선정 통보 공문 (경북TP→선정기업) '26. 9	⇒ 수혜기업 '26. 9.

※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설비 지원 (0개사 내외)	생산 최적화 지원	- 지원내용 ·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지원 ·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 지원 - 지 원 금 · 구미시 소재 : 기업당 최대 147,154천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 <u>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u>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 기존 생산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지 원 금 · 구미시 소재 : 기업당 최대 147,154천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 <u>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u>

※ 수혜기업 선정규모(수혜기업수, 지원금 등)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필수,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금형/설비 외 경비(나라장터 수수료, 회계정산비, 나라장터 규격심사•기술평가 등의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비용 등)은 기업자부담 예정(추후 확정)

○ (지원항목)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설계비, 설비구축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 지원불가 항목(공통) : 인건비 및 경비성 비용(간접비, 여비 등)

- 금형/설비 외 경비 : 기업자부담 예정(추후 확정)

※ 예시 : 조달/나라장터 수수료, 회계정산비, 나라장터 규격심사/기술 평가 등의 각종 위원회 운영 등

○ (지원방식) 국고보조금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등

- 선정기업은 e나라도움 민간보조사업자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예정

※ (의무)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의무) 사업종료 후 정보공개 및 사업비 정산 필요(회계법인 향후 지정 안내)

※ (권고) 생산성경영시스템(PMS)인증 지원사업과의 연계 [예:산업부 ‘생산성경영 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장비나 금형 구매 용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대한 절차, 일정 등은 선정기업 선정 후 상세안내 예정

※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외부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POOL을 제공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 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평가위원회에는 반드시 경북테크노파크에 사전 보고하여 일정 조율 → 절차 확인을 위한 경북테크노파크 직원 참여

국고보조금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의 의미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지니는 자

구분	내용	비고
핵심특성	- 보조금 교부(수령)후 보조목적에 따른 사업시행 -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및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	
보조금법 적용 대상	- 예산계정신청(제4조), 보조금 교부신청(제16조), 보조사업 내용 변경 등 승인신청(제23조, 제24조), 정보공시(제26조의3), 보조사업 실행보고(제27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별도계정의 설정 등(제34조), 중요재산 부기등기(제35조2)	- 정산대상(불인정/반납 대상) - 자부담 계좌 개설(자부담, 부가세 등 기업 입금계좌)
e나라도움 시스템상의	- 사업신청, 교부신청 및 재교부, 보조금 집행등록, 정산/실적보고, 반납처리 등	

구분	내용	비고
역할		
e나라도움 시스템상의 관리범위	- 사업수행관리, 자격검증, 중복수급 등 각종 부정수급 검증 대상, 보조사업자 종합 DB로 보조사업수행이력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평가방법)

- ① (현장실태조사)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기업역량 등 확인
- ② (대면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발표자료는 한글, PPT 등 자유양식)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기준	배점
기업현황 (40)	2024년도 방산매출 비중	20점
	최근 3년간 생산량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점
지원적정성 (40)	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	10점
	지원신청 설비의 적정성	10점
	지원 후 예상 생산량 증가의 적정성	10점
	목표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	10점
사업성/기대 효과 (20)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방위산업 파급효과	10점
합계		100점

4. 신청방법 및 서류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전산등록(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 2026. 9. 10.(목) ~ 2026. 9. 17.(목) 14:00까지
 - 등록처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 전산등록 전 회원가입 필요
 -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부하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과 같이 첨부된 서식 사용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 수	01. [양식1] 2026년 경북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날인 원본
	02. [첨부1] 참여기업 현장조사용 자가진단표	현장실태조사시 증빙확인용
	03. [첨부2] 기업·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날인 원본
	04. [첨부3]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날인 원본
	05. [첨부4] 성실의무이행서약서	날인 원본
	06.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구미시 소재)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07. 최근 3년(23~25년) 재무제표(국세청 등)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 정보 시스템(https://smart.gbtp.or.kr/login) 기업분석보고서 (※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08.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시	09.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텍스 발급가능)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최근결산연도 제출확인용
	11. 금형/설비 사업비 책정 산출근거용 공급기업 견적서	
	12. 최근 3년간(22~25년) 해당 무기체계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 기존 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기업 내부 보안을 준수)	
	13. 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현장실태조사시 증빙확인용
	14. 사업자등록증(본사)	필요시 제출
	15.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16.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 발표자료(자유양식) 제출일은 신청접수 마감 후 별도 안내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안내 및 유의 사항

-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외에는 접수 불인정
- ※ 하기 제출서류 모두를 등록해야 접수 완료됨, 전산 입력 미비 시 불인정(제출서류 누락시 접수 불인정, 지원신청 분류 필수 확인)

- 다음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②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③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작된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은 구미 지역(본사 또는 공장)에 배치하여 해당 부품 생산
- 선정된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종료 후 15년간 성과관리기간을 가지며,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매각,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변동현황 보고 및 공시 등록 등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문의처

부서	담당자	전 화	메 일
지역특성화추진본부 항공방위산업육성실	이상화 책임연구원 김민경 선임연구원	053-819-3091 053-819-3093	demian42@gbtp.or.kr mkkim22@gbtp.or.kr